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

- 응답기간 _ 2023년 4월 13일 - 4월 28일
- 응답기관 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19개 성폭력상담소

1. 상담분석 개요 | 1
 - 1) 피-가해자 관계
 - 2) 장애 및 준강간 유무
 - 3) 장애 있는 사례 중 준강간 유무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 4
 - 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 2)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없는 성폭력과 피-가해자 관계
 - 3) 폭행·협박 있는/없는 성폭력에서 장애, 준강간, 피-가해자 관계의 작용
 - 4) 성폭력 당시 상황
3.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과 그 이유 | 20
 - 1) 신고한/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 2)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4. 불송치, 불기소 된 강간피해 | 30
 - 1) 불송치, 불기소 현황
 - 2) 불송치, 불기소의 이유
 - 3) 불송치의 이유
 - 4) 불기소의 이유
 - 5) 불송치, 불기소와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세부 통계
 - 6) 불송치, 불기소에서 피-가해자 관계
5. 결론 | 43

1. 상담분석 개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폭행·협박 없는 강간 상담 및 불송치·불기소’ 현황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 지원한 강간사건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집계는 강간, 유사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을 포함한 강간 상담 사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기관은 협의회 소속 136개 기관 중 119개 기관이었고, 2개 기관은 강간사례 없음으로 제외하였다. 통계 집계한 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28일까지다.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물리적인 유형력의 폭행, 명시적인 협박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무) 경우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중복 선택 조사하였고, 불송치/불기소 이유 역시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중복 선택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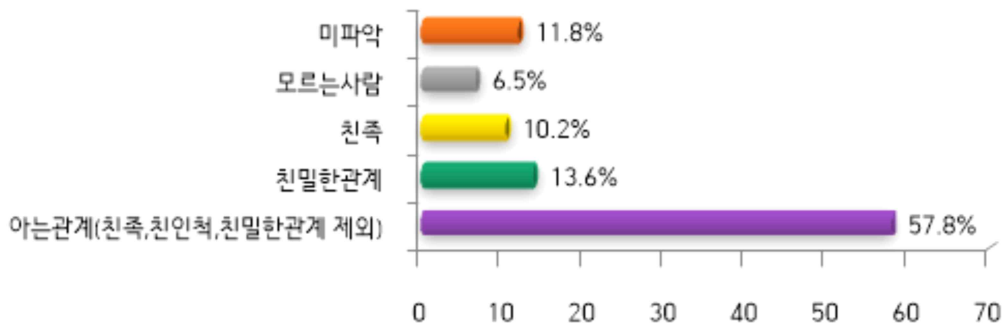
1) 피-가해자 관계

2022년 강간상담은 총 4,76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강간사례 4,765건 중에서 피-가해자 관계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통계프로그램의 ‘피-가해자 관계’ 분류형식을 기준으로 2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를 다시 친족, 친·인척 관계, 친밀한 관계, 아는 관계(친족 관계, 친밀한 관계 제외), 모르는 사람, 미파악·기타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1. 피해자-가해자 관계] 집계결과 아는 관계(친족, 친·인척, 친밀한 관계 제외)가 57.9% (2,757건)로 가장 많았고 친밀한 관계가 13.6%(646건)로 뒤를 이었다. 친족, 친·인척관계는 10.2%(487건), 모르는 사람 6.5%(311건), 미파악·기타 11.8%(564건)로 나타났다.

표 1. 피해자-가해자 관계 (대분류를 기준으로)

대분류 (5개)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제외)	친밀한 관계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	미파악 ¹⁾ 기타	계
건수	2,757건	646건	487건	311건	564건	4,765건
비율	57.9%	13.6%	10.2%	6.5%	11.8%	100%



1) ‘미파악’은 일회성 문의, 긴급 상담, 피해자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전화상담 등의 사유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표2.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1위에서 4위는 아는 관계였는데, 1위는 '채팅 상대자(612건 12.8%)', 2위는 동급생·선후배·친구(591건 12.4%), 단순 대면인이 3위(544건, 11.4%), 직장관계인이 4위(491건, 10.3%)로 나타났다.

5위는 친밀한 관계인 (전.현)애인으로 413(8.7%)건이었다.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에서 아는 관계와 친족, 친·인척, 친밀한 관계를 모두 포함하면 그 비율은 81.6%가 된다.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표 2. 피해자-가해자 관계 (순위별 1위부터 5위까지)

구분	피-가해자관계	건	비율	순위
아는 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채팅상대자	612	12.8%	1
	동급생·선후배	591	12.4%	2
	단순대면인 ²⁾	544	11.40%	3
	직장관계자	491	10.3%	4
친밀한관계	(전.현)애인 ³⁾	413	8.7%	5

표 3. 피해자-가해자 관계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관계) 2,757건 57.8%	채팅상대자	612	12.8%	1
	동급생·선후배·친구	591	12.4%	2
	단순대면인	544	11.40%	3
	직장관계자	491	10.3%	4
	동네사람	295	6.2%	8
	교사·강사	79	1.7%	14
	서비스제공자	72	1.5%	16
	종교인	44	0.9%	19
	복지시설 관계자	19	0.4%	21
	의료인	7	0.1%	24
친밀한관계 646건 13.6%	(전.현)애인	413	8.7%	5
	데이트상대자	131	2.8%	10
	배우자	68	1.4%	17
	과거배우자	33	0.7%	20
	4촌 이내 친척	120	2.5%	11

2) 단순대면인: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는 평소 오가며 인사정도 하는 사이이거나 혹은 친구의 지인정도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가 없던 사람인 경우

3) (전.현)애인: 연인관계였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상대자가 가해자인 경우. 특히 한쪽이 일방으로 연인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쌍방이 연인관계라고 하는 경우로써 피해자가 규정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함.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친족, 친·인척 487건 10.2%	친부모	111	2.3%	12
	형제·자매	93	2.0%	13
	의·양부모	75	1.6%	15
	그 외 친족	51	1.1%	18
	조부모	14	0.3%	23
	4촌 이내 인척	15	0.3%	22
	자녀	5	0.1%	25
	시부모	2	0.0%	26
모르는 사람 311건 6.5%	모르는 사람	311	6.5%	6
기타 및 미파악 564건 11.8%	미파악	303	6.3%	7
	기타	266	5.5%	9
	계	4,765	99.8	

기타(263건 5.5%)에는 부모의 지인(애인포함), 성매수자, 가출 당시 숙식 제공자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2) 장애 및 준강간 유무

[표4. 장애유무]를 보면 전체 강간 사례 4,765건 중에서 피해자에게 ‘장애 있음’으로 분류된 사례는 19.1%(908건), ‘장애 없음’으로 분류된 사례는 74.6%(3,557건), 미파악 6.3%(300건)이었다.

표 4. 장애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계
19.1%	74.6%	6.3%	100%
908건	3,557건	300건	4,765건

[표5. 준강간 여부]에서 전체 강간 사례 4,765건 중에서 술, 약물, 수면 등에 의한 준강간 사례는 29.4%(1,401건)였다. 준강간이 아닌 사례는 57.5%(2,738건)이었다. 상담을 통해 준강간 유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즉 미파악으로 분류된 사례는 10.7%(509)건이었다.

표 5. 준강간 여부

준강간 있음(술·약물·수면 등)	준강간 없음	미파악	계
29.4%	57.5%	13.1%	100%
1,401건	2,738건	626건	4,765건

준강간으로 분류된 사례 중 피해 당시에 대해 객관식 응답을 제외한 기타내용으로 기입된

주관식 서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관식 서술에서 대표 키워드를 추출해보았고, ‘술’ ‘만취’ 키워드는 총 79회, ‘잠’ ‘수면’은 총 26회, ‘약물’ 또는 ‘마약’은 총 8회가 언급되었다.

3) 장애 있는 사례 중 준강간 유무

[표6. 장애 있는 여부]에서 전체 908건의 장애 있는 강간사례 중 술, 약물, 수면 등에 의한 준강간 사례는 전체 사례 중 13.5%(123건), 준강간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사례는 74.8%(679건)였다. 미파악으로 분류된 사례는 11.7%(106건)이었다.

표 6. 장애 있는 강간상담 중 준강간 상황 여부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계
<u>13.5%</u>	74.8%	11.7%	100%
123건	679건	106건	908건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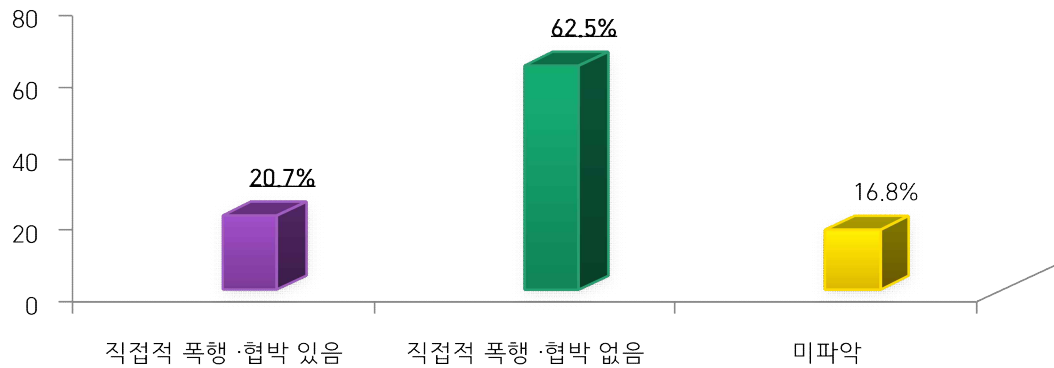
본 분석에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함께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의 강간 상담을 66개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집계하여,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1.4%에 육박함을 밝힌 바 있다. 본 분석에서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상담현장의 현실을 집계하고자 하였다. 본 집계와 분석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물리적인 유형력의 폭행, 명시적인 협박을 의미한다.

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전체 4,765건의 전체 강간 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은 62.5%(2,979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은 20.7%(984건)였다. 직접적 폭행·협박을 미파악한 사건은 16.8%(802건)이었다.

표 7.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직접적 폭행·협박 있음	직접적 폭행·협박 없음	미파악	계
<u>20.7%</u>	<u>62.5%</u>	16.8%	100%
984건	2979건	802건	4,765건



2) 직접적인 폭행 협박 있는/없는 성폭력과 피-가해자 관계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성폭력과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각각 대분류와 세부분류를 산출하였다.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아는 관계 (친족·친·인척·친밀한 관계 이외) 64.3% 1,916건	채팅상대자	464	15.6%	1
	동급생·선후배·친구	406	13.6%	2
	단순대면인	350	11.7%	3
	직장관계자	345	11.6%	4
	동네사람	181	6.1%	7
	교사·강사	61	2.0%	14
	서비스제공자	47	1.6%	16
	종교인	39	1.3%	17
	복지시설 관계자	18	0.6%	20
	의료인	5	0.2%	24
친밀한 관계 11.5% 341건	(전.현)애인	225	7.6%	5
	데이트 상대자	86	2.9%	10
	배우자	18	0.6%	19
	과거배우자	12	0.4%	21
친족, 친·인척 10.0 299건	4촌 이내 친척	79	2.7%	11
	형제·자매	62	2.1%	12
	친부모	61	2.0%	13

	의·양부모	53	1.8%	15
	그 외 친족	27	0.9%	18
	4촌 이내 인척	9	0.3%	22
	조부모	5	0.2%	23
	자녀	2	0.1%	25
	시부모	1	0.0%	26
모르는사람 200건 6.7%	모르는사람	200	6.7%	6
기타 및 미파악 223건 7.5%	기타	154	5.2%	8
	미파악	69	2.3%	9
	계	2,979	100.0%	

표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 (세부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건	비율(%)	순위
아는관계 (친족·친·인척·친밀한 관계 이외) 53.7% 528건	채팅상대자	96	9.8	4
	동급생·선후배·친구	121	12.3	3
	단순대면인	128	13.0	2
	직장관계자	90	9.1	5
	동네사람	73	7.4	6
	교사·강사	8	0.8	19
	서비스제공자	9	0.9	18
	종교인	1	0.1	22
	복지시설 관계자	1	0.1	22
	의료인	1	0.1	22
친밀한관계 24.3% 239건	(전·현)애인	147	14.9	1
	데이트 상대자	35	3.6	10
	배우자	40	4.1	9
	과거배우자	17	1.7	13
친족 ,친·인척 8% 79건	4촌 이내 친척	14	1.4	14
	형제·자매	10	1.0	17
	친부모	20	2.0	11
	의·양부모	13	1.3	15
	그 외 친족	13	1.3	15
	4촌 이내 인척	5	0.5	20

	조부모	3	0.3	21
	자녀	1	0.1	22
	시부모	0	0.0	26
모르는 사람 69건 <u>7%</u>	모르는 사람	69	7.0	7
기타 및 미파악 69건 <u>7%</u>	기타	51	5.2	8
	미파악	18	1.8	12
		984	100.0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와 [표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위순위를 차지하는 피-가해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에서 피-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자(15.6%) > 동급생·선후배·친구(13.6%), 단순대면인(11.7%), 직장관계자(11.6), (전.현)애인(7.6%) 순서였다.

채팅상대자가 1순위(464건 15.6%)로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팅상대자는 전체 강간상담집계 건 수 중 26유형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일 유형이기도 하다. 전체 채팅상대자 사건 612건 중 폭행협박 있는 경우는 15.7%(96건), 폭행·협박 없는 경우는 75.8%(464건)이었다. 전체 강간상담 중 폭행협박 있는 경우(20.7%)보다 폭행협박은 적었고, 전체 폭행협박 없는 경우(62.5%)보다도 폭행협박 없는 경우 비율이 더 높았다.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지하고 경험한 가장 많은 유형인데,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채팅, 어플, 온라인 등은 사람을 만나는 환경이 변화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법이 규율하는 성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되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여자들 홈런 치는 방법”, “술 마시고 강간하고 고소당하지 않는 법(ex. 모텔비는 여자 카드로 결제하라)” 등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성이 작동한다.

[표 9.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중 피-가해자 관계]에서는 (전.현)애인(14.9%) > 단순대면인(13%) > 동급생·선후배·친구(12.3%) > 채팅상대자(9.8%) > 직장관계자(9.1%) 순서가 도출되었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관계와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관계가 성격이 다를 듯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관계가 그대로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의 상위 5개 관계였다. 이 중 친밀성이 가장 높은 ‘(전.현)애인’ 관계에서 폭행·협박이 가장 높게 존재했다.

현행 법이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저항정도로 그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은 진짜 성폭력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진짜 성폭력일 거라는 편견을 재생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폭행·협박 있음과 폭행·협박 없음은 공존하고 있다. 이를 분리하여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저항했던 피해자만 선별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외면과 왜곡일 뿐이다.

3) 폭행·협박 있는/없는 성폭력에서 장애, 준강간, 피-가해자 관계의 작용

[표 10. 장애있는 강간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에서 전체 908건의 장애있는 강간사례 중 직접적 폭행·협박 없었던 강간은 62.0%(563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은 22.7%(206건)이었다. 직접적 폭행·협박 미파악 15.3%(139건)이었다.

표 10. 장애있는 강간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

폭행 협박 있음	폭행 협박 없음	미파악	계
22.7%	62%	15.3%	100%
206건	563건	139건	908건

[표 12. 직접적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에서 장애 및 준강간유무]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던 경우는 21%로, 직접적 폭행·협박 없는 상황(표 11)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던 경우 19%에 비해 다소 높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 상담 중 술·약물·수면에서의 성폭력(준강간)은 40%에 이르렀다. 준강간 아닌 상황도 57%에 달했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 상담 중에서도 술·약물·수면에서의 성폭력(준강간)은 14%가 있었으며, 준강간 아닌 상황은 57%였다.

표 1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2979건)에서 장애 및 준강간 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19%	75%	6%
563건	2244건	172건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40%	57%	3%
1,205건	1,706건	68건

표 12.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984건)에서 장애 및 준강간 유무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21%	76%	3%
206건	744건	34건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14%	80%	6%
140건	789건	55건

위 결과를 보면 술·약물·수면의 상황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준강간 상황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우연히 상호 대등한 관계

에서 술을 먹다가 성폭력 상황으로 이어진다고보다, 술·약물·수면이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상위 5개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에서 피-가해자 관계를 분류한 26유형 중 상위 5위를 나타낸 관계 - 채팅 상대자,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대면인, 직장관계인, (전.현)애인 사건에서 장애유무, 준강간유무,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피-가해자 관계를 차지한 채팅상대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 있음 비율이 전체 장애있음 비율 19.1%보다 훨씬 높은 28.6%로 나타났다. 단순대면인의 경우에도 장애있음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21.9%였다. 동급생·선후배·친구, 단순대면인, 직장 관계자의 경우 준강간 상황과 준강간 아닌 상황이 비슷하게 나타날 정도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준강간' 비율을 나타냈다. 단순대면인, 직장관계자, 동급생·선후배·친구의 경우 성폭력 상황에서 폭행·협박보다 술·약물·수면이 활용, 이용되었으리라 예상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앞서 분석한 내용대로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피-가해자 유형으로는 채팅상대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현)애인의 경우에는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을 17.7%에 훨씬 상회하는 31%가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상위 5개 피-가해자 관계에서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유무

피-가해자 관계	건	장애			준강간			직접적 폭행협박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 악	준강 간있음	준강 간없음	미파 악	있음	없음	미파 악
채팅상대자	612	175건	417	20	105	464	43	98	464	52
		<u>28.6%</u>	68.1	3.3	17.2	75.8	7.0	16.0	<u>75.8</u>	8.5
동급생· 선후배·친 구	591	85	479	27	251	296	44	121	406	64
		14.4	81.0	4.6	<u>42.5</u>	<u>50.1</u>	7.4	20.5	68.7	10.8
단순대면인	544	119	408	17	244	240	60	128	350	66
		21.9	75.0	3.1	<u>44.9</u>	<u>44.1</u>	11.0	23.5	64.3	12.1
직장관계자	491	32	420	39	215	227	49	90	345	56
		6.5	85.0	7.9	<u>43.5</u>	<u>46.0</u>	9.9	18.2	69.8	11.3
(전.현)애인	413	56	341	16	80	299	34	147	225	41
		13.6	82.6	3.9	19.4	72.4	8.2	<u>35.6</u>	54.5	9.9

4) 성폭력 당시 상황

전체 강간상담 4,765건 중 직접적인 폭행 협박 있었던 사건은 20.7%였다. 그렇다면 그 외 어떤 상황에서 강간/성폭력이 발생한 것일까? 본 통계분석에서는 성폭력 당시 상황을 객관식

과 주관식으로 집계하였다. 1순위, 2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많았던 상황이다. 미응답 1,874건을 제외한 2,891건의 응답을 총수로 놓고 비율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4. 피해 당시 상황

강요	회유	지위 이용	속임	그루 밍	폭언	괴롭 힘	가스 라이 팅	가해 자의 과시	경제 적 속박	기타	계
19.9%	17.6	11.0	9.7	7.9	4.6	2.9	1.8	1.5	1.4	21.7	100
576건	508	318	281	228	134	84	52	44	40	626	2891

표 15. 피해 당시 상황 (상황 서술)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강요	576	사귀던 남자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 요구한 이후 대인관계 어렵고 적극 대항 못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기면 가해자의 기분이 상하는 것이 싫어 원하는 대로 해줌 성폭행 후 폭행 지속적인 요구 이복오빠 갑자기 강압적으로 위력에 의한 강간 헤어지자고하니 찾아와 강제로 유사강간 성기 고통 불법촬영 폭행 스킨쉽을 시도하자 거부했으나 가해자가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하는 이유로 성관계를 안하면 헤어진다고 함 장애를 이용 헤어지자는협박 장애를이용 협박 기습 가족이 알게될까봐 소리지르지 못함 단 둘이 있을 때 본인 신변안전에 대한 불확실함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가해자가 억지로 성폭행 기습적 부부관계 응하지 않으면 이혼사유 된다면, 몸이 아파도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 제압 더 심해질까봐 참음 힘으로 제압 가해자가 세명이고 두명이 양팔을 잡고 힘으로 제압 같은 술자리에 있던 학생들끼리 함께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압적으로 성폭력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강요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워있는데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실랑이 끝에 도망쳐 나옴 계속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성관계를 시도하다 도망쳤는데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 호스트바에서 호스트에게 추행, 성폭행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에 삽입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함 피해자를 몸으로 방어함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그걸빌미로 협박함 술로 인사불성 사귄다면 성관계 해야한다고 함 친부로부터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 당함 기습 억지로 요구함
회유	508	아빠가 딸을 유사강간했으나 엄마의 충격이 걱정되어 신고 못함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모텔에 가서 싫다는데 강간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함 애인이라며 원치않는 성관계 지속요구하여 성병 걸림 학원원장이 중학생인 피해자에 예쁘다며 성적접촉하고 성관계 힘으로 억압 콘돔이 준비안되어 거절하였으나 나중에 자포자기함 처음에합의하였으나 중간에 고통스러워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함 좋다고 하면서 성관계 요구 피해자가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는 질내사정을 유도한 것이고, 펠라치오를 했을때 역겨워서 초코우유를 먹은 것을 피해자도 즐긴 것이라고 피해자를 호도함. 이후에도 계속 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힘 만취한 내담자 유인 심리적으로 기운없고 취약한 상태 가출로인한 숙식제공 집에 가게 해 준다고 하고서는 못가게 함 혼인약속 선배여서 위력이 행사 가해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함 음식 및 선물등 물질적 회유 구걸 애원 마약소지 피해자의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었다가 뺏다가 하는 성행위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 금전을 미끼로 성폭행 어릴적 오빠로부터의 성폭행 부동산문제로 가해자와 만난 상황에서 회유하며 들어와 팔 아픈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성폭행 어릴적 가정폭력을 피해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 거부하였으나 잠시 쉬어가자며 끌고감 스토킹 초등학생때 놀이한다 함 미성년자 채팅술자리 성매매알선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지속적요구 가만히 있었음 유인 피해당시 잠을 자고있었고 계부가 범행을함. 본인만 참으면 엄마가 새롭 게 이룬 가정이 깨어지지않을거라 생각하여 참음 지속적으로 용돈을 줌 악귀에 씌였다고속임 3명의 사촌오빠로부터 유사강간 아는사람 심적부담 집구해주겠다 약물 연인관계위장 돈을받고 성관계함 채팅어플이용 협박 커피사주겠다 유인 강아지를 함께 찾아주겠다 함
지위이용	318	만취상태로 피해장면만 잠깐 기억나는 상황에서 피해 친부관계 저학년 괴롭힘 동정심 몸을 짓누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년에 피해자가 죽을 사주다. 기도만 하면 된다.' 는 말을 해서 두려운 마음에 이모에게 이야기하니 물으려고 함 기습 직장에서 근무시 지속적인 추행 피해사실 알릴 시 가족붕괴에 대한 걱정 거래처납품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으로 감금 병원 입원시 병원관계자로 부터의 피해 어릴적 친오빠로부터 폭행과 함께 성폭행 피해 직업적으로 가해자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성폭행 술 마신 상황에서 성폭행 중 피해자가 깨서 거부하니 진급을 이유로 회 유하며 성폭행 지속함 공권력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어릴때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 알게 되었을때도 저항하지 못함 술을 마신후 조건제시 하지 말라고 뿌리치며 저항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미성년 강제 추행 및 유사강간 문화센터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 바지 내려라"라고 함 4학년 때 교사가 성폭력했으나 당시는 신고못하고 중학생이 되어 말하 게 됨 평상시 거부에대한 부정적 인념이 작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활동보조하는 대상자로서 가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 을 먹게되었고 취기가 있다보니 잠시 누어있겠다고 말한뒤 잠이 들었는 데 잠든 피해자를 강간미수하려다 그친상황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2급에 피해자로서 친부와 사촌오빠가 지속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적으로 사랑한다~결혼하자 등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간음 사랑 = 성관계라고 함 지적장애
속임	281	어린시절 성폭력 경험으로 신고 못했고, 이후 성정체성 혼란 술을 함께먹고 의식있었는데 눈떠보니 모텔에서 하의가 벗겨져 있었음 집에 찾아와 애인처럼 여기게하며 원치않는 강간하고 연락 안됨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2인에 의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피해를 입음 의료행위인척 속임 모텔에 잠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함 술모임인줄 알았는데 마약병개 보드카페 가서 음란물 상영 애기만 한다고 함 약물사용 피해자 부상중에 교제약속 귀신불임 술과 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행세함 수면중 너무 어려서 행위의 의미를 잘 몰랐음 성매매알선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제공자에게 옆드려보라며 본인이 마사지 잘한다 며 속이고 강제로 성기 삽입 채팅으로 만나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합동으 로 간음 차를 태워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 전 연인관계이지만 채무관계가 얽혀있어 채무로 협박하며 성폭행 종교단체 교주를 신격화하여 저항하지 못함 가해자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정말 닮았었는데 남자친구와 가해 자가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와 성관계 미성년자, 성인채팅자 평소 가해자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거절하지 못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처음만난 당일 사귀자고 제안하고 사귀는 사이에 서는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그루밍하여 강제로 성관계 가족을 만나기 전 전 직장동료인 가해자를 만남 채팅으로 만난 상대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여 연애상황 처럼 대화를 주 고 받았으며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성관계를 요구. 가족을 만나기 전 전 직장동료인 가해자 만남
그루밍	228	카톡으로 알게되어 금전사기와 강간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삽입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함 아동에게 담배 중고폰 돈을 줌 가출하여 디지털성폭력 피해 탈시설한 보호자 없는 궁박한 아동내 성폭행, 아동은 사랑이라고 여김 수년 전이고 두려워 말못함 할아버지가 밥을 먹고 가라고 하며 성폭력 어렸을 때 동네삼촌이 예뻐해서 성폭력 인지 함 피해사실 알릴 시 가족붕괴에 대한 걱정 저항하지 못함 가해자의 그루밍에 의한 성폭행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연인관계로 포장(미성년자) SNS로 알게된 가해자와 만남이 있었고 피해학생이 화장실을 가는사이 따라와 힘을 강압적으로 성폭행 같은 술자리에 있던 학생들끼리 함께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압적으로 성폭력 친밀한 관계 형성 후 사건 발생
폭언	134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강간 폭력, 협박, 갈취 피해 당시 미성년자, 편부-양부로부터 가해상황 지속발생 가부장적가족 문화로 큰오빠인 가해자의 위력이 강력했음 조직폭력배, 온몸 문신 지인의 집에서 잠시 숙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절도혐의를 우며 폭행 하고 협박한 후 성폭행 신체적 폭력 구타, 목조름, 공포감 조성 힘으로 제압당함 피해당시 아주 어린나이(입학전)였고 가해자는 친할아버지의 친구분으로 사실을 알리면 가족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영업실적을 빌미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계약을 빌미로 강간 기초수급비 못받게한다 협박하며 성관계 강요 폭행 엄마가 있는 곳에서 강간
괴롭힘	84	가해자가 가족이라서 대응하기 힘들. 구결 애원 채무관계 소극적 거절의사 밝혔으나 가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함. 가해 장소가 가해자의 집이었는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신변이 위험 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성관계에 응하게 됨.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힘으로 제압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몸이 아플당시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학원원장, 계부가 힘을 이용하여 성폭행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함 정신장애 이용
가스라이 팅	52	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력 완력 사용 피해자의 불안, 수면장애, 무기력 이용 사랑하는 사이 이용
가해자의 과시	44	일진 선배 협박 저항하지 못함 부부간 성폭행 신뢰관계 이해부족
경제적 숙박	40	성학대, 낙태경험 14세 가출 후 우연히 만난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자 마자 폭행을 하고 성 폭행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기타	626	가출상태 알바직원에게 피해 미취학 아동으로 어려서 그냥 당하고 성인되기까지 지속됨 잠결에 기습하여 거부 못함 모텔에서 술만 마신적이 있어 의심없이 갔으며 강압적인 힘으로 강간 음료수에 약물을 타서 마시게 함 25년전 사건으로 성폭력인지 못함 술에 만취되어 수면중 주는 술을 잠깐 입에 댔는데 정신없음 약물이용 심신상실상태 만취상태 친구들과 술 마신후 헤어졌는데 역으로 향하던 중 의식 잃음. 행인이 남 자화장실에서 하의가 벗겨진것을 발견 스킨십이 더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진행하다 미수 데이트성폭력 차안에서 기습적으로 접근하여 유사강간. 애무만 하기로 하여 스킨십을 하는 중에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붙잡고 강간 성관계 중 중단을 요청했으나 가해자가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감금, 절도 미성년자간 온라인그루밍 사건 당일 아닌 다른 날 자살협박 성관계 후 연애편계로 잠시 전환 외국인(돈환전 도움) 술자리를 갖다가 취하지 않았는데 강간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당함 차 뒷좌석에서 눌러서 움직일 수 없었음 체중으로 누름 외진곳으로 데려감. 저항 어려웠음 가출팸에서 피해입음 스텔싱 술에 취해 정신없는 상항이용 거절의사 밝힘 밀치는 정도 약간의 억압.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함 강제로 삽입 손목잡고 몸을 눌러 피해자 억압 자는척했음 친한 동료(가해자)와 술마시고 잠든 상황에서 발생한 비동의간음 성기 음란행위 불법촬영 학교내 성폭력 13살때 아버지의 성폭행 장남만위하는 가정환경 삼촌 성폭력인지 몰랐음 이복오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억이 없음. 약물사용 술에 취함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대면상담에서 상세 내용 파악하기로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으심 피해자 만취 후 잠든사이 강간 기습 준강간 만취한 내담자 유인강간 기습 방으로 유인 공포로인한 경직 술자리에서 기습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폭력을 행사함 야간 이동시 폐쇄병동에서 만난 사람 잠자다가 강간 자고 있는데 강간함 룸카페에서 힘으로 제압당함 만14세미만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 두려워 성관계 를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음 상대 가해자를 연인관계로 생각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엄마와 헤어질까 두려움) 연인관계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할 것에 합의하여 성관계 하던 중, 콘돔이 빠진 것을 피해자가 인지 하고 중단하길 요청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지속 가해자의 힘으로 제압 친족성폭력 만취상태로 노상방뇨중 사진촬영됨 조건만남 약물과다복용으로 심신미약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 가해자 집에서 잠이 들었고, 가해자가 핸드폰 동영상 찍는 소리에 일 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음 싫다고거부 블랙아웃 술과 잠 3일을 못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상황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렸고 정신을 잃음 집에 무단 침입하여 수면 마취 기습, 협박(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 술을 많이 마셔서 피해 당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방심하자 가해 피해자는 자고 있었고 피해 당시에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목격자가 있어 피해 상황을 알게 됨 엄마의 지인, 일을 도와달라 하여 갔다가 같이 술을 마시게 되고 그 후 사건 발생 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어남 피해 당시 아동으로, 피해 인지 못함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음(준강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환경 미화원이 신고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성폭행. 이후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연인관계 형성. 어릴적 택시기사로부터 강간미수 피해 같이 술을 마신 후 가해자가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가해자가 들어와 성폭행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 피할 곳 없는 차 안에서 유사강간 어릴적 친족성폭력으로 연인사이로 착각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끌고감 감금으로 도망나올수 없는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 청소년성매수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 무서워 얼어붙음 어려서 제대로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상함만 감지 공포, 두려움 저항, 화장실로 도망 가해자가 영상을 찍고있었음, 도망, 주변인 도움요청 강제로 옷벗김, 거부의사표현 남자화장실로 강제로 끌고감 침대로 끌고감, 공포, 두려움 가해자와의 채팅에서 금전적인 내용이 오갔고 피해자가 5만원 받았다고 함 피해자 모의 애인집에서 피해자는 자고 있었는데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 함. 하지말라고 팔꿈치로 쳤는데 엄마가 와서 가해자는 자는척 함 채팅어플에서 만난 가해자가 돈줄테니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함. 5만원 받음 가해자 눈빛이 두렵게 느껴짐 가해자 말투, 눈빛 무서움 술 마시던 남친과 남친 친구가 다리 한쪽씩 잡고 특수강간 피의자 2명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특수강간함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못함 피해자가 술에취해있는 상태에서 이웃집 남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간강하려던중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게됨.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고, 같이 모여 술을 먹고 1박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간음 술자리가 있었고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올라간 상황에서 강제로 동네 이웃으로 집에 혼자 아이가 있는것을 확인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에게 범행 간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속여 술을 먹게 한후 성폭행 놀이로 인식시킴 연인에게 콘돔을 하라고 했으나 강제로 함 아버지가 10세때부터 15세까지 추행, 강간 성매수자인 가해자가 성관계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방식의 성관계 가해자에게 말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술기운에 행동으로 저항하지 못함 모의 동거인에 의한 강간피해 약물복용으로 기억하지 못함

피해당시 상황	건수 (건)	내용
		합의하에 성관계, 피해자 13세 채팅상대자와 돈을 매개로 조건만남 피해자 중증장애 피해자의 임신으로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중증장애 학교교사가 피해사실 인지하여 신고 채팅상대자와 돈을 매개로 조건만남 피해자가따라감 아무런 이유없음 어릴적 함께 살았던 사이로 왕래가 있던 사이 위압감 지하철에서 만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카페로 가는 길에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에서 성폭력 피해 공원, 화장실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 DVD방에서 영화보던 중 갑작스럽게 동거 중 강간및 유사강간행위의 지속 블랙아웃상태 큰아빠의 성폭력 가해자가 만나러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위협 10년동안 동거를 하면서 지속적인 피해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가자고 하여 따라감 집에 찾아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짐 손님이 치마속으로 손을 넣음 가해자와 편의점에서 술을사서 가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함. 핸드폰을 뺏고 욕을 해 무서웠음 아는 남자와 술을먹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 모텔에 감 일하러가는 트럭안에서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 예쁘다고 하며 성관계 후 임신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 시도하자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3 만원을 받음 밭에서 일을 하다 점심시간에 가해자 집으로 데려감 평소에 아는 사람이 골목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기다리다 피해를 당함 벚꽃구경을 하자고 하며 차에 태워 모텔로 간뒤 성관계함. 12시가 되어 개인택시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놀다 가 자고 택시기사가 말하였고 피해를 당함 20살에 만난 남자친구(현 남편)에게 지속적인 피해 폐가 및 공원근처로 나오라고 하여 나간뒤 피해 70세 이웃주민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식사를 하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권해 함께 마시고 노래방을 간뒤 모텔 로 이동후 강간 라이브방송중 쿵(현금화할수 있는머니)을 준다고 하여 나감 부산으로 데려다줄 사람을 구하다 만난 남자와 모텔, 음식을 배달하고 기다리는 사이 피해 치마를 입고 걸어가다 가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여 따라감 직장사장이 휴식시간에 창고로 데려가 피해 손님이 야한동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길을 가다 만나 차에 타서 피해

피해 당시 상황은 장애유무, 준강간 상황, 폭행협박 있는/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 [표 16. 피해 당시 상황]으로 살펴보았다. 피-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 친족, 모르는 사람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유형 하나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계로 비율을 산출하였고, 무응답은 별도 표기하였다.

표 16. 피해 당시 상황 - 세부분석

		강요	회유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폭언	괴롭힘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과시	경제적 속박	기타	계	무응답
전체	비율	<u>19.9</u>	<u>17.6</u>	<u>11.0</u>	<u>9.7</u>	<u>7.9</u>	<u>4.6</u>	<u>2.9</u>	<u>1.8</u>	<u>1.5</u>	<u>1.4</u>	<u>21.7</u>	100	
	건수	576	508	318	281	228	134	84	52	44	40	626	2891	1874
폭행·협박 없는	비율	18.1	<u>21.5</u>	12.0	11.3	10.0	2.3	2.6	2.4	1.5	1.3	17.0	100.0	
	건수	356	423	236	223	198	45	51	48	29	26	336	1971	1008
장애 있는	비율	<u>23.2</u>	<u>22.8</u>	5.7	9.9	8.3	4.1	2.2	1.1	1.6	0.3	20.7	100.0	
	건수	146	143	36	62	52	26	14	7	10	2	130	628	280
준강간	비율	<u>22.7</u>	12.2	6.4	10.5	1.7	4.6	2.2	1.5	2.0	0.2	35.9	100.0	
	건수	93	50	26	43	7	19	9	6	8	1	147	409	992
채팅상대자	비율	17.8	<u>31.2</u>	1.1	13.0	16.5	3.5	0.2	2.0	0.9	2.2	11.6	100.0	
	건수	81	142	5	59	75	16	1	9	4	10	53	455	157
전·현애인	비율	<u>30.5</u>	14.5	1.1	9.5	8.8	11.5	4.2	4.6	1.5	1.9	11.8	100.0	
	건수	80	38	3	25	23	30	11	12	4	5	31	262	151
친부모	비율	15.7	9.6	<u>25.3</u>	2.4	7.2	6.0	0.0	4.8	3.6	2.4	22.9	100.0	
	건수	13	8	21	2	6	5	0	4	3	2	19	83	28
모르는 사람	비율	18.1	14.5	0.6	<u>19.3</u>	6.0	1.2	3.6	0.6	1.2	1.2	33.7	100.0	
	건수	30	24	1	32	10	2	6	1	2	2	56	166	145

전체 집계에서는 강요 > 회유 > 지위 > 속임 > 그루밍 > 폭언의 순서로 피해 당시 상황이 드러났다. 그런데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는 회유가 가장 높았고(표 16-1 참고), 장애 있는 성폭력에서는 강요와 회유가 비슷하게 가장 높았다. 준강간 상황에서는 강요가 가장 높았다.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서도 살펴보았을 때 채팅상대자의 경우는 회유, 전·현애인은 강요, 친부모는 지위이용, 모르는 사람의 경우 ‘속임’이 가장 많은 피해당시 상황으로 파악된다.

가해자가 채팅상대자인 경우, 구체적 성폭력 상황 응답을 보았을 때 회유(132건), 강요(70건), 그루밍(68건), 속임(52건)의 비율이 채팅상대자 중 폭행·협박이 없던 488건 중에서 322건으로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친족·친·인척·친밀한관계를 제외한 아는 관계에서 2순위

로 나온 동급생·선후배·친구(442건 13.5%)의 구체적 성폭력 상황 응답을 보면 강요(68건), 회유(45건), 속임(25건), 괴롭힘(12건), 그루밍(9건), 지위이용(8건), 가해자의 과시(7건), 폭언(5건), 가스라이팅(4건), 기타(53건)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피해자의 비동의 의사를 무시한채 회유, 강요, 심리적 지배, 속임의 상황에서 발생한 강간피해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6-1.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 (순위)

	회유	강요	지위이용	속임	그루밍	괴롭힘	가스라이팅	폭언	경제적속박	가해자과시	기타	계	무응답
비율	21.5	18.1	12.0	11.3	10.0	2.6	2.4	2.3	1.5	1.3	17.0	100.0	
건수	423	356	236	223	198	51	48	45	29	26	336	1,971	1,008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당시 상황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는 응답의 주관식 기입 내용을 살펴보았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지속적인 요구, 구걸 애원, 헤어지자고 하니 찾아와 강제로 유사 강간, 성관계를 안 하면 헤어진다는 협박, 헤어지자는 협박, 부부관계 응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 된다면, 몸이 아파도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였다.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관계를 종결시키겠다는 강요 속에서 피해자 의사와 전혀 무관한 성관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동급생 선후배, 단순대면인 관계에서 ‘회유’ ‘강요’가 작동하는 상황의 주관식 응답에서는 “사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거나 “구걸 애원”하며 “억지로 요구”한다는 키워드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분명히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용되지 않거나, 관계를 유지 혹은 중단하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걸하고 구걸하며 피해자를 몰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양태를 상담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는 강간과 성관계가 여전히도 구분되지 않는 성문화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회유’ ‘강요’ 응답에서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주관식 키워드는 “심리적으로 기운 없고 취약한 상태, 가출로 인한 숙식 제공, 집에 가게 해준다고 하고서 못 가게 함, 금전을 미끼로 성폭행, 커피를 사주겠다고 유인함, 집 구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가해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는 가해자 대부분은 채팅 상대자였다.

3.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과 그 이유

1) 신고한/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전체 상담 4,765건 중 신고한 성폭력은 3,235건, 신고/고소하지 않은 성폭력은 1,009건, 미파악 521건이었다.

표 17.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비율

구분	신고·고소함	신고·고소하지 않음	미파악	전체
비율(%)	67.9	21.2	10.9	100
건	3,235	1,009	521	4,765

전체 중 신고·고소를 한 경우는 67.9%,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2%다. 전성협 전체 통계 중 신고·고소 비율은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12월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연구] 성범죄 신고율 2013년 1.1%, 2016년 2.2%, 2019년 1.7% 보다 높는데, ‘성폭력상담소’를 찾고, 듣고, 안내받아 전화하고 지원받는 경우는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고 지원받는 과정은 신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벽이 있으나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으며,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통계에서도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한 해 동안 ‘강간’상담 중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62.5%였다. (표 7 참조) 폭행·협박, 피해입증 가능한 증거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법을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고소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상담소에 전화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신고/고소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21.2%는 어떤 상황일까? 이에 대해 살펴본다.

표 18.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

		신고한	신고 안한	무응답	계
전체	비율	67.9	21.2	10.9	100.0
	건수	3,235	1,009	521	4,765
폭행·협박 없는	비율	71.7	22.7	5.6	100.0
	건수	2,135	677	167	2,979
장애있는	비율	83.7	10.7	5.6	100.0
	건수	760	97	51	908
준강간	비율	76.3	16.6	7.1	100.0
	건수	1,069	232	100	1,401
채팅상대자	비율	81.5	13.1	5.4	100.0
	건수	499	80	33	612
전·현애인	비율	67.8	23.0	9.2	100.0
	건수	280	95	38	413

		신고한	신고 안한	무응답	계
친부모	비율	60.4	29.7	9.9	100.0
	건수	67	33	11	111
모르는사람	비율	73.0	19.9	7.1	100.0
	건수	227	62	22	311

[표 18.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를 통해 신고한/하지 않은 성폭력 상황은 장애유무, 준강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피-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 친족, 모르는 사람 카테고리 중 대표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유형 하나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계로 비율을 산출하였고, 무응답은 별도 표기하였다.

전체 집계 중에서 신고안한 비율이 '친부모'가 29.7%, '전·현애인'이 23.0% 순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신고한 비율은 '장애'가 83.7%, '채팅상대자'가 81.5%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해당 통계를 통해 피해자가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있는 경우는 주변에 의한 고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신고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채팅상대자에서 장애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연이어 신고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전체 중 신고·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2%(1,009건)에 달한다. 그 중 미응답 83건을 제외한 926건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적은 수치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9.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구분	피해자의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자 상황	기타	계	미응답
비율(%)	32.8	31.0	10.3	10.0	6.6	4.6	4.4	0.3	100	
건	304	287	95	93	61	43	40	3	926	83

표 20.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상황 서술)

키워드	건	세부사유
피해자 상황·상태	304	초등4학년의 기억이고 도움을 청하지 못함 성정체성 고민 연락두절 상담할 준비가 될 때 다시 연락하겠다

키워드	건	세부사유
		지방 거주 과거사건이라 지나가고 싶어함 피해자는 13세 미만이며 해외거주중 고소 원하지 않음 남자친구가 한 강간이지만 양가감정이 있어 신고는 안함 강요적 성관계가 싫으나 많이 좋아하고 있음 20대 초 어린 시절 피해이고 힘들 고소는 고민하고 있음 당시 상황에 고소하기가 어려웠음 심신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힘들까봐 가해자로부터 다른 더 큰 문제로 정신없어 고소못함 피해자 진술하러 가서 취소함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음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대응에 어려움 겪음 조건만남/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소년원 수감중 금전적 관계 연루. 남성 경찰 앞에서 피해를 말하기 어려움 수치심, 자기혐오 일상을 위해 안 하기로 결심 정조 관념으로 가해자와 결혼함 없던 일로 하고 싶었음 결혼해 준다고 했음 남자친구도 있어서 없던 일로 하자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았음 좋게 좋게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서 고소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움 성범죄와 엮이는 게 싫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음 가폭, 성폭 중 미결정 임신중 경제적인 문제 본인도 술을 먹어서 그냥 참고 지나가려 했음 내담자가 해외에 거주 중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 강간으로 인한 임신 및 결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경제적 도움을 받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냈음 건강상의 이유 힘이 되어줄 가족도 없어 말못함 경제적 속박(양육비)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가해자에 대한 욕만 할 수 있음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할 결심 방학 끝나고 고소할 결심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

키워드	건	세부사유
		다고 하면 혼이 날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함. 자살. 자해충동 심해 정신과 입원 종교적인 이유로 죄책감과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강간피해 이후 가출 중복장애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함.
사건관련 (고소 고려 입증 어려움 고소취하 합의 공소시효)	287	연인관계라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음 12년전 사건, 공소시효 기간 지남 초등 4학년 때의 강간 증명의 어려움으로 신고 주저함 신고 부담이 커서 고소 고려중 불리한 증거가 있음 30여년 전 사건 증거부족 폭행협박이 없어서 고소하지 않음 공소시효 도과 폭행으로만 고소함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어서 고소 전 합의 폭행협박이 없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들 위주 경찰이 미파악 성관계 인정 안됨 경찰이 폭행협박이 없으므로 고소가 어렵다고 안내 이전 성폭력사건 수사재판과정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 당시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말에 고소하지 못함 강간죄 적용 어려움 최협의 입증 어려움 불송치 염려 성폭력피해 근거 없음 변호사 상담 후 불리한 것 같아서 고민 자신의 행동이 가해자에게 합의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1366에서 당시 신고를 안했으면 암묵적으로 용서를 한 것으로 추정되 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음 메시지 내역 등을 다 지워 증거가 없어서 피해 전후 자신의 태도가 애매하여 법은 약하다고 생각함. 국내 현행법상 비동의의 간음죄가 없다 하여, 피해자 고소하지 않음. 촬영피해만 신고함 준강간을 증명하기 어려워 경찰서에서 사건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 고소하지 못함 경찰에 대한 불신,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증거도 없어서 망설임 경찰에서 자신을 경제사범 사기범으로 몰까봐 하지 않음 성폭력피해 증거를 찾아오라는 경찰의 말로 신고 포기함 변호사 상담에서 사건하기 어렵다함
'2차 피해' 두려움	95	가족이 아는 것이 두려워 신고 안함 보복당할까봐 두려움 예술품, 피해를 볼까봐

키워드	건	세부사유
		성희롱성폭력으로 회사에 징계조치는 취했으나 공직의 소문과 무고의 염려로 형사고소는 고려중임 피해라고 보기에 애매한 상황이어서 무고당할까 봐 역고소에 대한 걱정 무고로 보복 당할까 봐 학교 관계자로 소문 우려 가해자가 고용주로 법적대응에 대한 부담감 가해자에게 피소당함 신고하여 전과자를 만들게 될까 봐 두려웠음 동네가 시골인데 누가 알게 될까 봐 협박받음. 가해자는 성인이고 부자. 피해자는 어리고 가난한 집안의 여성,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음 사진 유포 협박 남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수사관이 말함 경찰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며,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한 말을 듣고 무서워서 신고하면 더 괴롭힐 것 같아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신고하지 않음 같은 동료이기도 하고 회사에 소문날까봐 미신고 피해자를 해코지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고소는 하지 못함.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따돌림을 당할까 봐 신고를 하지 못했음 상사를 고소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음. 전 직원이 본인 빼고 남성, 사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우려 같은 업계로 이직해야 하여 계약직이어서 신고하기 두려움 시험지를 내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를 알리면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미리 봤다고 해서 자퇴 당하게 할 거라 협박 회사 생활을 유지해야 해서 신고 후 보복과 동영상 유출의 염려 가해자는 군대 상사로 가해자가 무섭고 성폭력 신고 시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올까봐 못함 목사님을 상대로 신고하기가 두려웠음
주변의 반대·관계	93	관계단절두려움 자녀에게 알려질까 봐 친족관계라 성추행을 알면 가정파탄이 걱정되어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준강간했으나 언니와의 관계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음 할아버지가 행위자인데 가족이 신고를 원하지 않고 관계단절이 걱정되어 신고 못함 가족이 신고를 못하게 하고 회유해서 신고를 못함 가족이 신고 만류 가족간 단절이 불편하여 신고하지 않음 가족이어서 부모님이 아실까봐 아무 조치도 않았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다 가족들이 하지 못하게 함 엄마가 알까 봐 주변의 만류

키워드	건	세부사유
		교회 사람들이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부모의 비난 등 부모님 모르게 신고하고 싶음(성인되면) 아빠가 화가 나서 진술을 제대로 못함 아버지가 경찰이라 신고하지 못함 부모가 미조치 가족의 무감각 주변의 부정적 의견 언니의 지인이라 최대한 좋게 지내고 싶어서 친부가 무시함. 가족, 주위인지 부담 피해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함 당시 담임 선생님께 알리자 선생님이 묻는 게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함. 피해자 공무원 시험 준비로 보류한다고 함 부모의 부인으로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가족에게 알렸으나 지지받지 못함 가정폭력 및 부모의 직업으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 배우자가 못하게 해서 조부모의 반대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고 부모가 신고를 원치 않음
다른 해결방법 희망/진행	61	변호사 선임하여 가해자 퇴사 권유 및 합의요청 예정 성희롱성폭력으로 회사에 징계조치 가해자 파면 다른 피해(절도)관련하여 신고함 법적처벌 보다는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부터 받고 싶음 심리적 어려움으로 회복에 집중하길 원함 종교 내에서 처벌하여 신고 안함 학교만 알려서 가해자 퇴직 학내징계 사내 심의결과 후 고소 진행 여부 결정예정 교내 신고 사과를 원함 이혼소송, 가사소송 진행 학폭위 다른 죄로 신고할 경우 가해자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신고 고민함 교육기관을 통한 처분을 원함 신고보다는 자신의 상황 이야기하고 위로받고자 전화상담 아동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부터 받도록 권유 현재 타국 거주/ 가해자 가족과 주변에 폭로하는 방식을 원함 기독교 내 문제해결 원함 교육을 희망함 기관연계 직장 내 감사반에만 신고조치 이혼하길 원함 쉼터연계 고소보다는 분리를 원하였음 학내조치 후 법정진행은 하지 않음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태임

키워드	건	세부사유
피해 인식 여부	43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지 안함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피해에 노출되어 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고 괜찮다고만 함 피해로 인식하지 않음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함 아들이 아니라 연인처럼 느껴진다고 함.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관계로 성폭력으로 인지 안함 당시엔 피해라고 인지 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피해에 대한 확신 없음 (술) 스스로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 하지 않음 피해자가 강사를 좋아해서 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함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피해로 인식하지 못함 피해사실을 부인함 가해자가 사귀자고 함. 강간이라고 인정하기 싫었음. 연인관계를 되돌리고 싶기에 신고는 안하기로 결정 가정 내 문제라고 생각함 당시에는 피해인 줄도 몰랐음 당시에는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해 말하지 못함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상함만 감지하여 가족 내부 문제로 여김 다수 성폭력 경험으로 사건에 대한 무감각 채팅상대자와의 만남 지속 및 폭력에 대한 인지 및 경계설정의 어려움 피해인지 몰라서 부부관계 문제라 반복 애인관계였다 합의 하에 성관계로 인식(성관계를 통해 애정욕구 충족을 보상 또는 위로 받았음으로 인식) 피해상황을 특정하지 못함 피해자 동의
가해자 상황·상태	40	강간했던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 가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해자와의 연락 두절 가해자가 경찰로 고소 생각하지 못함 가해자 사망 가해자 불상 가해자도 장애인이라서 가해자 외국인 출국 가해자 강제 추방 가해자 자살 가해자가 경찰신분 가해자 특정 어려움 애인 관계 계부 아빠의 성문제가 드러나고 엄마와 이혼하여 같이 살지 않게 됨

키워드	건	세부사유
		친족관계 친척관계 동성에 의한 성폭력 오빠라서 아빠라서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동료라서 조폭이어서 모르는 사람이어서
기타	3	싫었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주지 않아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싶음 가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어머니가 목인, 모텔 비용을 대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표 20.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상황 서술)] 중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다른 해결방법 희망’을 살펴보면, ‘피해자 상황’은 고소를 원하지 않음, 자책, 수치심,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싶은 마음, 장애로 인한 진술어려움, 건강상의 이유 등 피해자의 심리상태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건관련’은 고소취하, 공소시효, 합의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증거, 폭행·협박 없음, 합의한 것처럼 보일까봐 등 피해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가 있는 폭행, 불법촬영 건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폭행·협박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된다고 하거나, 증거를 찾아오라고 한다거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것이라고 하거나 등 수사기관의 안내로 인해 신고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다른 해결방법 희망’에서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만을 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 외 주목할 것은 회사·학교·종교 등 조직 내 징계조치 등 수사·법적 과정 외에 다른 해결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는 자기 자신, 직장과 소속업체, 종교나 문화적 관념, 가족과 주변사람, 경찰 등으로부터 강한 자책감, 무력감, 힘듦, 해결이 요원한 상태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고소는 손쉬운 방법이 결코 아니며, 많은 난관과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길임을 생각하게 된다.

[표 21.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장애유무, 준강간 상황,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를 통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표 21.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그 이유 -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피-가해자 관계

		피해자 상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인식	가해자 상황	기타	계	무응답
전체	비율	32.8	31.0	10.3	10.0	6.6	4.6	4.4	0.3	100	
	건수	304	287	95	93	61	43	40	3	926	

		피해 자상 황	사건 관련	2차 피해	주변 인 관계	다른 해결	피해 인식	가해 자상 황	기 타	계	무 응 답
폭행·협박 없는	비율	<u>33.1</u>	<u>32.3</u>	9.8	8.7	5.9	5.7	4.3	0.2	100	
	건수	209	204	62	55	37	36	27	2	632	45
장애 있는	비율	<u>34.1</u>	18.2	12.5	<u>17.1</u>	3.4	<u>10.2</u>	3.4	1.1	100	
	건수	30	16	11	15	3	9	3	1	88	9
준강 간	비율	<u>36.2</u>	<u>31.2</u>	13.1	7.7	3.2	4.1	4.5	0	100	
	건수	80	69	29	17	7	9	10	0	221	11
채팅 상대 자	비율	<u>43.8</u>	20.5	12.3	6.9	6.9	5.5	4.1	0	100	
	건수	32	15	9	5	5	4	3	0	73	7
전현 애인	비율	<u>34.8</u>	29.2	12.3	4.5	<u>11.2</u>	4.5	3.5	0	100	
	건수	31	26	11	4	10	4	3	0	89	6
친부 모	비율	29.0	16.1	0	<u>29.0</u>	6.5	0	19.4	0	100	
	건수	9	5	0	9	2	0	6	0	31	2
모르 는사 람	비율	<u>44.1</u>	25.4	11.9	3.4	3.4	6.8	5.0	0	100	
	건수	26	15	7	2	2	4	3	0	59	3

전체 926건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상황 > 사건관련 > 2차 피해 > 주변인관계 > 다른 해결 원함 > 피해인식 여부 > 가해자 상황 순으로 나왔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과 준강간의 경우 ‘사건관련’이 ‘피해자 상황’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폭행·협박 없는 강간은 현행 강간죄의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 준강간은 ‘심신상실’과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 기준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카테고리에서 피해자 상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해자 상황’은 피해자 스스로의 자책감, 무력감과 관련이 높았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과 ‘채팅상대자’의 경우 ‘피해자 상황’이 40%를 넘는다. 채팅상대자는 43.8%, 모르는 사람은 44.1%가 피해자 상황을 이유로 신고/고소하지 못하였다.

채팅상대자의 경우에 자신이 원해서 만나게 되었거나, 성적 관계를 예상하거나 원했다는 식의 선입견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채팅상대자가 겪는 자책감과 무력감의 수위를 보면 채팅상대자와의 만남과 성적 침해가 예상 밖, 통제 밖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흔히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난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도움 받고 지지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쉬운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드리운 자책감과 무력감의 벽은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채팅상대자’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상이해 보이는 카테고리 모두에서 피해자는 자책과 무력감을 겪고 있다.

‘친부모’는 다른 항목과 다르게 ‘주변인 관계’가 ‘피해자 상황’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족을 신고하는 것, 가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만류, 피해자가 겪게 되는 부담의 현실을 보여준다. 친족성폭력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및 연장이 필요한 지점이다.

4. 불송치, 불기소 된 강간피해

전체사례 4,765건 중 신고나 고소를 진행한 경우는 3,235건이다. 이 중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를 살펴보았다. 이 수치는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 정확하기는 어렵다. 불송치는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의 결정이고, 송치는 검경수사권 이전과 이후의 송치를 포함한다. 송치가 많다면 불송치 결정을 적게 한 결과라기보다, 수사종결권이 없던 상황에서의 경찰 송치를 포함하고 있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기소의 경우에도 검경수사권 분리 이전의 기소가 있고, 분리 이후 송치를 거친 기소,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이후의 기소가 포함되어 있다.

불송치 비율, 불기소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고소/신고를 하는 피해자나 시민들에 비해 수사기관이 얼마나 성폭력 사건들을 누락시키고 있는지,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서 그 비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강간’과 강간 이외 성폭력 죄목들은 불송치와 불기소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 비판, 제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경찰통계, 검찰통계를 통한 불송치율, 불기소율을 살피는 것과, 그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계속되는 과제다.

이 통계분석에서는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비율 도출에서 전체 숫자 상정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비율’이 아닐 경우 비율 표기는 하지 않고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했으며, 비율이 유의미할 때는 비율을 표기했다. 그리고 2022년 상담 강간상담사례 중 ‘불송치’ 된 것의 이유, ‘불기소’된 것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불송치, 불기소 현황

표 22. 신고/고소된 사건,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사례수

상황	전체 강간상담	신고/고소함	신고/고소않음	미파악		
건수	4,765	3,235	1009	521		
비율	100.0	67.9	21.2	10.9		
상황	신고/고소건수	송치 (검경수사권 분리 전후 포함)	불송치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수사중	해당없음	미파악
건수	3,235	1,590	571	492	12	570
상황	송치된 건수 (검경수사권 분리 전후 포함)	기소	불기소	검찰판단중	미파악	
건수	1,590	1,157	125	146	162	
상황	불송치 건수	이의제기함	이의제기 안함	고려중	미파악	
건수	571	134	210	29	198	

비율	100.0	23.5	36.8	5.1	34.7	
상황	불송치 후 이의제기 건수	기소	불기소	검찰판단중	미파악	
건수	134	19	72	12	31	
비율	100.0	14.2	53.7	9.0	23.1	

전체 신고건수(3,235건) 중 불송치건은 571건이었다. 이 중 이의제기를 한 건은 134건(23.5%), 이의제기 고려중은 29건(5.1%), 이의제기 안함 210건(36.8%), 미파악 198건(34.7%)이다. 이의제기를 한 건은 고려중인 것과 합쳐도 전체 불송치 건 중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의 사건 공론화, 처벌의사가 중단되게 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성인지적 감수성이 요구된다.

이의제기 한 134건 중에 불기소 처분된 건수는 53.7%(72건)이며, 기소된 건은 14.2%(19건)이었다. 불송치가 되었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하여도 매우 적은 건만 기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전체 강간상담 중 기소된 것, 고소/신고한 강간사례 전체 중 기소된 것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은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상담 사례 대비 기소되는 건은 1/4 수준이다. 고소/신고한 상담사례 대비로는 1/3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표 23. 강간상담 및 고소/신고한 강간 대비 기소비율

강간상담(전체)	기소된 건 (전체)	전체 강간상담 대비 기소율
4,765	1,176	24.7%
고소/신고한 강간(전체)	기소된 건 (전체)	고소/신고한 강간 대비 기소율
3,235	1,176	36.4%

2) 불송치, 불기소의 이유

불송치, 불기소 이유를 객관식 항목 중 1, 2순위 선택으로 집계하고, 이어 주관식 이유도 기재하게 하였다. 1, 2순위 응답을 합한 내용과 응답된 전체 숫자 중 비율은 표 24와 같다.

표 24. 불송치, 불기소의 이유 (객관식, 복수 응답)

구분	불송치 이유응답	비율(%)	불기소 이유응답	비율(%)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19.3	35	17.0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04	17.6	38	18.4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12.7	31	15.0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55	9.3	21	10.2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5.1	16	7.8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3.2	3	1.5
진술오염	9	1.5	2	1.0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1.7	2	1.0
공소시효 도과	2	0.3	0	0.0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의)	135	22.9	45	21.8
미파악	37	6.3	13	6.3
총계	590	100.0	206	100.0

불송치, 불기소에서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합의 등을 이유를 포함하는 기타 항목이 가장 높았다. 그를 제외하고는 불송치에서는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의 이유가 19.3%로 가장 높고, 이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17.6%로 두 번째였다. 불기소에서는 피해자 진술신빙성 의심이 18.4%로 가장 높고, 이어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이 17.0%로 높았다.

현행 폭행·협박 입증 방식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폭행·협박이 없다는 상황은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불인정과 함께 연동되고 있지 않을지 유추하게 된다.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폭행·협박도 없었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이다. 그렇다면 최협의 폭행·협박이나, 광의의 폭행·협박이나 동의여부나 강간죄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판례를 완화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신빙성 인정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요건 성립/불성립도 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면에서는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 저항유무’의 기준은 오랫동안 ‘저항하는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라는 피해자다움을 형성해왔다. 극심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못하는 것이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진정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여러 상황, 관계, 조건, 전후의 맥락, 피해자의 대처방식 등이 수사기관으로는 ‘믿지 못할 것’이 되고 피해자가 진술신빙성 없는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다.

폭행·협박이라는 유형력 기준,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문제 삼는 판례와 학설은 달라져야 하며, 이 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피해자 진술을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맥락적으로 듣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3) 불송치의 이유

표 25. 불송치 이유 세부 응답 (주관식)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폭행 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성관계 중 물고 빠는 것은 상해로 보기 어려움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성관계 당시에 상황이 폭력적이지 않음 유형력 행사 증거 없음 잡아끌고 밀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후 함께 산부인과 방문함 자발적 만남으로 해석됨 피해 이후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피해 이후 지속적 방문 및 연락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104	진술일관성부족 진술시 추가내용번복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일시, 행위태양 등에 대해 특정하기 어려움 피해 진술 번복 2명의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 피해자의 비일관성있는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또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함. 3년 전 피해상황을 신고 진술 번복 피해자 진술불일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없음 동행했던 친구와 진술 다름 진술분석 상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려움. 상담소의 상담 확인서와 피해자 구술 내용, cctv상 일치하지 않음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이 번복 cctv영상 불일치 친구의 증언과 불일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참고인이 들은 바 없다고 답변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의심하였고 추후 피해자의 가족도 피해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함 진술과 증거정확이 상이함 거짓말탐지기 거짓 진술분석가의 의견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 차에 탔고, 피해시 적극적인 저항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맞지 않음 가해자와 진술불일치 사건당시 피해자는 기억에 없고, 가해자는 정확하게 진술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녹취록)에 신빙성이 실림 가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 장애로 사건일자 등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같은 동성과 같은 장애인 장애의 이유 발달 장애인으로 진술의 어려움, 피해자 부가 가해자 편에서 증언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여 진술신빙성 의심 허위신고 배제할 수 없음 피해시간에 대한 의심 교제 정황 합의인 듯 한 메시지 준강간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공백이 있다 수면 중 성폭력 피해 납득 어려움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성폭력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진술불가로 인한 내사종결 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55	피해 후 다시 가해자를 만남 피해 이후 연락 주고 받음 피해 이후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고, 고가의 명품을 요구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제 피해 이후 카톡내용 : 서로 농담을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 첫 피해 이후 여러 차례 가해자집에 감 첫 강간 후에도 왜 계속 만났는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피해 이후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 피해 이후 친근함을 표현하는 메시지 연인관계지속 애인사이 이미 성관계가 있어서 사건 발생일의 성관계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연인관계의 성관계 불법타투시술자와 모텔에 감 모텔로 가해자와 합의 동행함 모텔에 함께 감 반복적 피해 거부하거나 도움 요청안함 자발적 만남 잠시동안 연인관계였다 두 사람이 동거하며 사귀는 것으로 간주 CCTV확인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등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고 협박 없었음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인여성으로 당시 처음 만난 사람과 폭행 협박없이 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서 여성상위체위로 강간을 당한 것이 적극적인 성행위로 인식됨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됨 키스방 알바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님' 이라고 적힘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 피해자로 보기 힘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약물 검출되지 않음 불법촬영물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를 시도함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가해자의 집에서 한달간 생활 성관계가 여러 번 지속, 성매매 관련되어 있음 두 사람이 외도로 따로 거주지를 두고 생활한 것, 금전이 오감 사기사건과 함께 진행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함
진술오염	9	피해자가 이상심리를 보여 환청과 환시를 말하는 등 진술오염 구체적 진술 부족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부모가 장애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시 부모가 숨기느라 적절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함 과거 학폭위 때 성폭력사건을 부모가 아는 것이 두려워 사건을 덮기 위해 가해자와 합의에 의해 한 것이라고 자필진술서를 쓴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것이 불리하게 작용 합의된 관계로 피해자 진술서 작성 교육청 이관 후 조사과정에서 무혐의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함 피해 사실은 맞으나 피해자의 대응 미흡 피해자가 원해서 진행한 사건이라고 판단
공소시효 도과	2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의)	135	위력입증 안됨 폭행협박 입증 어려움 가해자 주장 뒤집기에 증거 불충분 구체적인 사유없이 증거 불충분. 증거자료(녹음파일) 요청했는데 피해자 제출하지 않음 구체적인 사유없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 불충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DNA검출안됨 CCTV 등 직접 증거 없음 피해자가 지목한 모텔이 없음 너무 오래되어 입증 어려움 불성립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무혐의 처벌 불원, 합의 고소취하 피해자 심경의 변화로 인해 신고 후 고소 취하함 신고취하 10년전 강간사건으로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부모님이 3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함 15년전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하였음 가해자 특정 불가능 가해자 특정 안되어 기소중지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유로 불송치 가해자가 외국인이며 출국상태 피의자 사망 가해자는 14세 미만 아동으로 처벌 대안으로 심리 치료 가해자 자살 신원 미파악 범인을 못잡음 가해자가 파키슨병이라 불송치함 피해자진술거부 피해자 연락이 안됨 피해확인 어려움 피해자 사망 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 진술을 허위신고로 의심 및 피해자 고소취하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성적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 동성간 합의 장난전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자율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미파악	37	

(이상 경찰의 불송치 이유 내용 분류, 나열)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송치 판단이 기술되어 있다.

성관계 중 물고 빠는 것은 상해로 보기 어려움 /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성관계 / 당시에 상황이 폭력적이지 않음 / 유형력 행사 증거 없음 / 잡아끌고 밀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후 함께 산부인과 방문함 / 자발적 만남으로 해석됨 / 피해 이후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음 /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 피해 이후 지속적 방문 및 연락 /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방문을 했다는 것, 산부인과를 갔다는 것 등의 사정은 사건 당시 상황과 무관할 수 있고, 연락을 해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불송치 사유를 보면 폭행·협박 입증 여부를 극심한 저항유무로 판단한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피해자다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유추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으로 오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준강간, 장애여부,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의 불송치 이유

구분	불송치 이유전체	비율	장애있는 성폭력	비율	준강간	비율	폭행협박 없는	비율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114	19.3	37	17.2	21	11.5	83	18.4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 심	104	17.6	56	26.0	39	21.4	86	19.1
가해자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75	12.7	35	16.3	16	8.8	64	14.2
피해자다움에 대 한 통념 작동	55	9.3	9	4.2	11	6.0	48	10.7
심신상실 항거불 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30	5.1	1	0.5	25	13.7	26	5.8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19	3.2	10	4.7	5	2.7	16	3.6
진술오염	9	1.5	8	3.7	4	2.2	5	1.1

피해자에 대한 오인	10	1.7	5	2.3	2	1.1	8	1.8
공소시효 도과	2	0.3	0	0.0	0	0.0	2	0.4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 의)	135	22.9	51	23.7	43	23.6	90	20.0
미파악	37	6.3	3	1.4	16	8.8	22	4.9
총계	590	100.0	215	100.0	182	100.0	450	100.0

[표 26. 준강간, 장애여부,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서의 불송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 있는 성폭력의 경우 불송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가장 높았다. ‘장애를 이유로 진술신빙성 부족’ 이라고 판단한 불송치 이유 기재도 많았다.

장애있는 사례 불송치, 불기소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진술신빙성 의심과 피해자다움은 장애라는 상황이 더해져 피해를 더욱 입증받기 어렵다. 장애로 인해 날짜 장소, 행위 태양, 가해자 등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술반복, 진술신빙성 의심으로 쉽게 연결된다. 장애로 인해 수사기관-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신뢰받기 더욱 어렵고, 가족에 의해 피해가 축소·왜곡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보다 주변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도 한다. 제3자에 의한 진술오염, 거짓, 허위신고로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분석가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진술신빙성 없다는 진술분석가의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며 진술신빙성을 쉽게 배척한다(‘(진술신빙성 없다는) 진술분석가의 의견’). 장애 있는 성폭력에서 진술분석가는 제대로 선발되고, 교육되고, 성폭력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하고 있는지, 진술분석가의 의견 외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 정황을 보조할 만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가해자가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로 인해 성폭력 발생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거나,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장애여성 피해자의 맥락적 이유, 가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등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준강간 사건 중 불송치이유를 보면, 미파악을 제외하고 기타 (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합의)가 23.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진술신빙성 의심’이 21.4%,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 어려움’이 13.7%,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이 11.5%였다.

준강간의 특성상 심신상실의 상황에서 강간피해가 있었기에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묘사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피의자 진술의 모순이나, 현장 수사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신빙성과 사실입증,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더 요구받고 있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시 불송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가해자의 주장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이거나 (응답 중: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실림, 피해자의 기억이 없고 가해자가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판단),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였으며 (응답 중: 피해자가 지목한 모델 없음, 피해시간 의심, 동행한 친구와 진술 불일치,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신고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고소진행을 포기함)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협소하게 해석했다(응답 중: 수면 중 성폭력 피해 어렵고 증거불충분, 불법촬영물 상 피-가해자가 대화했다.). 또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여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응답 중: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다,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다, 피해자 스스로 차에 탔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하였다, 모텔로 가해자와 합의 동행했다.).

준강간을 완전히 ‘심신 기능을 상실하여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이 가능한 상황’으로 좁게 해석하는데다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수사관의 통념이 겹치며 준강간은 법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 정신을 잃는 것과 별개로 신체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블랙아웃’ 상황에서의 준강간의 사례에서도 ‘피해자답지 않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불송치 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불기소의 이유

표 27. 불기소 이유 세부 응답 (주관식)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38	저항했으나 동의로 해석, 항거불능 입증 어려움. 재정신청했으나 동의로 인정되어 기각 지속적 성피해가 불륜관계로 해석되어 무고와 상간녀 소송을 당함 만취 피해자진술 신빙성이 없음 cctv손잡는 장면 찍힘. 피해이후 가해자와 연락주고 받음 진술일관성 없음 불송치 이유와 동일 고소취하, 진술 왔다갔다(고령 피해자), DNA나왔으나 정액은 나오지 않아서, 약물 투여 다음날 피해라서 진술상 강간성립 어려움 고소시점을 두고 받아 들여지지 않음. 초기진술 때 기억나지 않은 상황까지 부풀려 진술, 2차 진술 때 1차때와 다르게 진술한 점/ 가해자의 폭행 건에 대해 고소취하한 점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음 피해 전후 일관된 진술. 피해 당시 술 마신 정황. 성관계 관련. 종료된 경위에 대해 비밀관. 검찰에서 진술과 경찰 진술 간 불일치. 진술시 가해자를 좋아한다고 함. 진술 상 사건 일시,장소가 번복됨 피의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진술 사건시간 불일치
폭행 협박 입증되지 않음	35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불송치 사유와 동일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음 피해자의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 불충분 폭력성과 강제성이 떨어짐
가해자의 행위가	31	검찰이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여 실형선고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성폭력사건은 연인관계로 보고 죄가 없다고 판단함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21	피해후 가해자와 소통함"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불륜의심 DNA검출 안됨 가해자와 대화하면 피해 장소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한 대화였다고 불송치이유서 반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증거불충분(확실한 사유 미기재)-첫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한 것이 문제가 됨 피해자라면 지속해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 강간 피해 이후 다시 사권 정황 등을 피해자답지 못하다 강간 피해 이후 사귀던 중 강간 피해 후 다시 헤어졌으나 이후 관계를 지속한 것 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는 등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가 다소 이례적. 합의에 의한 관계와 강간 범행일시경 명확히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가해자와 만남을 지속함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음 반복적 피해 사실관계상이 거부하거나 도움 요청 안함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기 어려움	16	교육이수조건으로 불기소처분되어짐 불법촬영만 인정되고 준강간은 증거불충분 피해자가 상황 파악 및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취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하였는지 여부가 피해자 진술에서 확인되지 않음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화간으로 판단	3	이전의 성이력, 금전적 관계 연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빌린돈을 받고자 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이런 정황이 피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편견, 금전적 관계 개입
진술오염	2	
피해자에 대한 오인	2	
공소시효 도과	0	
기타(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합의)	4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합의 장애인 간음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가해자가 인식해야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움 경찰에서 마무리 가족들과 관계유지 처분수용 합의.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적극적인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 소극적 대처

불송치 이유	건수	세부 내용
미파악	13	

[표 27. 불기소 이유 세부 응답]을 보면, 불기소 이유에서도 불송치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 관계를 유지했거나 했을 때 성폭력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수사과 판단이 아니라, 피-가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한다면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가족, 부부의 경우에 성폭력 성립이 어려워진다는 모순이 등장한다. 피-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관계를 성적 침해, 성적 언동이 가능한 관계로 가해자가 규정한 이후에 이것이 역전되지 않는다면 피해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가해자의 권력과 전횡에 수사기관 역시 승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화간 이데올로기’로 피해자가 극심한 저항, 극단적 관계단절을 하지 않으면 ‘동의를 성관계’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술 확보, 현장 및 정황적 증거 확보, 사건 발생의 맥락과 이후 문제에 대한 확인 등 적극적인 수사와 판단이 요구된다.

5) 불송치, 불기소와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세부 통계

불송치, 불기소된 사례는 어떤 현황인지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다. 장애 여부, 준강간 여부, 폭행협박 여부에 대해 전체 비율을 중심으로 하고, 신고/고소한 건 중 비율, 불송치 된 사안 중 비율, 불기소 된 사안 중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28. 불송치, 불기소 된 강간사례(571건)에서 장애, 준강간, 폭행협박

	장애 있음	장애 없음	미파악
불기소(213건) 중	71건 33.3%	127건 59.6%	15건 7.0%
불송치(571건) 중	198건 34.7%	352건 61.6%	21건 3.7%
신고/고소(3235건) 중	760건 23.5%	2377건 73.5%	98건 3.0%
전체(4,765건 중)	19.1%	74.6%	6.3%
	준강간 있음	준강간 없음	미파악
불기소(213건) 중	83건 39.0%	104건 48.8%	26건 12.2%
불송치(571건) 중	180건 31.5%	349건 61.1%	42건 7.4%
신고/고소(3235건) 중	1069건	1893건	273건

	33.0%	58.5%	8.4%
전체(4,765건 중)	29.4%	57.5%	13.1%
	폭행협박 없음	폭행협박 있음	미파악
불기소(213건) 중	140건 65.7%	50건 23.5%	23건 10.8%
불송치(571건) 중	412건 72.2%	107건 18.7%	52건 9.1%
신고/고소(3235건) 중	2135건 66.0%	775건 24.0%	325건 10.0%
전체(4,765건 중)	62.5%	20.7%	16.8%

전체 강간상당 4,765건 중 장애 있음의 비율은 19.1%이고(표 4 참고), 신고/고소한 건 전체 3,235건 중 장애 있음 비율은 23.5%인데, 불송치 된 사례 중에는 34.7%, 불기소 된 사례 중에는 33.3%로 불송치, 불기소 건 중에서 장애 있는 피해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있는 강간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처리하는 등의 수사과정의 문제가 크다.

준강간의 경우 전체 상담 중 29.4%를 차지했고, 신고/고소한 건 중에서는 33.0%에 해당했지만, 불기소 된 사건 중에는 39.0%로 훨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은 전체 상담에서는 62.5%였고, 신고/고소한 건 중에서는 66.0%로, 현실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이 명시적,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해도 강간으로 이를 인식하여 신고/고소하고 있음을 살폈다. 그런데 불송치된 건을 보면 폭행·협박 없는 강간 비율은 72.2%로 상승하고, 폭행·협박 있는 경우에도 18.7%가 불송치 되고 있었다. 불기소는 65.7%가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었고, 폭행·협박 있는 경우에도 23.5%가 불기소 되고 있었다. 앞서 살핀 신고/고소하지 않은/못한 이유에서도 경찰이 증거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폭행·협박 정도 요건으로 불송치 판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최협의설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문제인지, 변화되어 온 판례를 숙지하고 않고 있는 문제인지, 피해자 의심, 가해자 봐주기 식의 편견이 폭행협박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에 응집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살펴져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론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불송치와 불기소 이유, 유형, 피-가해자 관계, 장애 및 준강간 여부 등도 세부적인 통계와 분석이 진행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판단기준, 수사력 등이 변화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해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 과정 및 사회적 지원, 예방 과정도 변화될 수 있다.

6) 불송치, 불기소에서 피-가해자 관계

표 29. 불송치, 불기소 건에서 피-가해자 관계를 살펴보고 비율을 산출해보았다.

표 29. 전체, 불송치, 불기소 중 피-가해자 관계

피-가해자관계(구분)	전체상담 중 비율 %	불송치 중 비율 %	불기소 중 비율 %
친족, 친·인척	<u>10.2</u>	<u>5.4</u>	<u>5.2</u>
친밀한관계	<u>13.6</u>	<u>16.6</u>	<u>17.8</u>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u>57.8</u>	<u>64.1</u>	<u>67.1</u>
모르는사람	<u>6.5</u>	<u>5.8</u>	<u>3.8</u>
기타, 미파악	11.8	8.1	6.1

표 30. 전체, 불송치, 불기소 중 피-가해자 관계 (26유형)

구분	피-가해자관계 (26유형)	전체 중 비율	불송치 수	비율(%)	불기소 수	비율 (%)
친족, 친·인척	친부모	<u>2.3</u>	11	<u>1.9</u>	3	<u>1.4</u>
	그외 친족	1.1	5	0.9	5	2.3
	조부모	0.3	3	0.5	0	0.0
	자녀	0.1	0	0.0	0	0.0
	형제·자매	<u>2</u>	4	<u>0.7</u>	0	<u>0.0</u>
	4촌 이내 친척	<u>2.5</u>	5	<u>0.9</u>	1	<u>0.5</u>
	4촌 이내 인척	0.3	0	0.0	1	0.5
	의·양부모	1.6	2	0.4	1	0.5
	시부모	0	1	0.2	0	0.0
친밀한관계	(전·현)애인	<u>8.7</u>	64	<u>11.2</u>	25	<u>11.7</u>
	데이트상대자	<u>2.8</u>	18	<u>3.2</u>	5	<u>2.3</u>
	과거배우자	<u>0.7</u>	8	<u>1.4</u>	4	<u>1.9</u>
	배우자	1.4	5	0.9	4	1.9
아는관계 (친족, 친·인척 친밀한관계 이외)	단순대면인	<u>11.4</u>	84	<u>14.7</u>	33	<u>15.5</u>
	채팅상대자	<u>12.8</u>	75	<u>13.1</u>	28	<u>13.1</u>
	직장관계자	<u>10.4</u>	70	<u>12.3</u>	35	<u>16.4</u>
	동급생·선후배·친 구	12.4	67	11.7	21	9.9
	동네사람	<u>6.2</u>	45	<u>7.9</u>	18	<u>8.5</u>
	서비스제공자	1.5	14	2.5	4	1.9
	교사·강사	1.7	5	0.9	2	0.9
	복지시설 관계자	0.4	4	0.7	1	0.5
	종교인	0.9	1	0.2	0	0.0

	의료인	0.1	1	0.2	1	0.5
모르는사람	모르는사람	6.5	33	5.8	8	3.8
기타	미파악	6.3	15	2.6	4	1.9
	기타	5.5	31	5.4	9	4.2
계		99.9	571	100.0	213	100.0

표 29. 피-가해자 관계를 전체 상담, 불송치 건, 불기소 건 중에서 살펴보면 ‘친족, 친인척’,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상담 전체 중 비율보다, 불송치 내 비율, 불기소 내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친족성폭력과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신고/고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고, 신고/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불송치, 불기소에서 누락되는 비율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친밀한 관계의 경우 상담 전체 중 비율은 13.6%였는데, 불송치에서는 16.6%, 불기소에서는 17.8%로 그 비중이 높아진다. 아는 관계 역시 상담 전체에서는 57.8%였는데, 불송치에서 64.1%, 불기소에서는 67.1%로 높아진다. 친밀한 관계와 아는 관계는 실제 강간사례 중 비중이 높으나 수사과정에서 배제, 누락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세부 관계는 ‘채팅상대자’였는데 (표 3 참고), 불송치 중에서는 ‘단순대면인’이 가장 높았고, 불기소에서는 ‘직장관계자’가 가장 높았다.

피-가해자 관계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 친척 등은 전체 상담 > 불송치 > 불기소로 갈수록 비율이 적어진다. 반면 전.현 애인, 과거 배우자, 단순 대면인, 채팅상대자, 직장 관계자의 경우 전체 상담 중 비율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불송치, 불기소 비율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피해 발생 관계, 조건,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현 애인과 직장관계자 등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비율이 높은 것은 수사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수사의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5. 결론

본 통계분석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점을 변화의 지렛대로 염두에 두면서 정책적, 제도적, 법적, 인식 문화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대응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 강간 상담 중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가 22.7%이다.
-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강요(19.9%), 회유(17.6%), 지위이용(11.0%), 속임(9.7%), 그루밍(7.9%)가 가장 많았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에서는 회유(21.5%)가 가장 많았고, 장애 있는 강간에서는 강요(23.2%), 회유(22.8%)가 많았고, 준강간에서는 강요(22.7%)가 가장 많았다.
- 피-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57.8%) > 친밀한 관계(13.6%) > 친족, 친인척(10.2%) > 모르

는 사람(6.5%) 순서였다. 26개 세부 유형 중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관계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폭행·협박 있는 성폭력 역시 상위 5개였다. 성폭력이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한 관계, 전·현 애인 등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폭행·협박 유/무는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은 67.9%가 고소/신고했으며, 21.2%가 고소/신고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고소/신고하지 못한 이유에는 피해자가 자책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없고 주변에서 도움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 요인’이 가장 컸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준강간은 사건 성립에 대한 어려움이 작용했고, 장애 있는 성폭력과 가족 간 성폭력은 ‘주변인’ 때문에 신고/고소하지 못하는 비율이 컸다.
- 불송치, 불기소 된 이유를 보면 ‘폭행·협박 입증되지 않음’,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두 가지가 불송치, 불기소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폭행·협박 입증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는 연동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가해자 관계가 친족이거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전체 불송치 - 불기소 단계에서 비율이 줄어들지만,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 장애있는 성폭력, 준강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불송치 - 불기소로 가면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다. 수사와 처벌과정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강간 상담 전체 중 기소된 비율은 24.7%이며, 고소/신고한 강간상담 전체 중 기소된 비율은 36.4%였다. 수사 기관은 여전히 피해자다운지 아닌지 따지고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한 건은 23.5%이고, 이의제기 후 기소된 건은 14.2%에 불과했다. 피해자다운지나 피해자의 극심한 저항유무에 의존하여 판단하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신고/고소,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과정에서 누락된다.